

I. 기초 사실

1.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랜덤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매출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2.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기획조사 대상 피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9. 12. 18., 2020. 3. 13.)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수집현황

3. 피심인은 랜덤채팅 서비스 앱을 운영 중이며, 2020. 1. 5. 현재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회원정보	(필수) 이메일, 출생년도, 성별, 이동 전화번호(안드로이드만)		명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사실 관계

가.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를 요구한 행위

4. 피심인은 2011년 5월부터 랜덤채팅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향후 제공 예정이던 위치(근거리 대화 제공), 마이크(음성메시지 전송) 서비스의 경우에도 접근권한 동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5.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5.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를 요구{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한 행위

7. 피심인이 2011년 5월부터 랜덤채팅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앱 설치 시 주소록, 전화, 위치, 마이크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치(근거리 대화 제공), 마이크(음성메시지 전송) 서비스의 경우 향후 제공 예정인데도 당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를 요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접근권한 동의	§22의2 ①	§9의2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를 요구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8. 피심인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9.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결론

10.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6월 24일

위원장 한상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위 원 허 욱



위 원 김 창 룡 (인)

(인)

위 원 안 형 환

